

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2월 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보건복지부장 조규홍

● 법률 제20217호

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

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”을 “국민보건 증진, 환경보전 및 보건·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환경유해인자 등”을 “환경유해인자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보건·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보건·환경연구협의회) ① 연구원은 보건·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·환경연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·시험·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보건·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,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·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·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